

현행 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일부 착오에 관하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부산의무실

황 남 철

On the Classification of Obstacles in Life Insurance

Nam Chul Hwang, M.D.

Medical Department, Korea Life Insurance Co. Ltd.

처음에

재해 장해 특약부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되는 장해 급수에 따라 소정 비율의 장해 급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더욱이 장해 2~3급 시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므로 장해에 대한 판정은 공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은 전적으로 보험 약관의 장해 등급 분류표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가입시 장해가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에서도 장해 등급 분류표는 가·부 판정에 크게 참고가 된다.

필자는 사의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진단과 사정업무를 맡아 보면서, 현행 생명보험 약관의 장해 등급 분류표의 제3급 7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여기에 몇가지 예를 들어 그 이유를 지적코자 한다.

표 1과 표 2의 비교

약관집에 수록되어 있는 종전의 장해 등급분류표 표 1과,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표 2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84년에 개정

될 당시, 보험용어 정비에 따른 새 용어를 채택하였고, 1개 항에는 한가지 결함만을 기술함으로써,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종전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없는 내용으로서,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 새로이 추가되어 있는 항은 다음과 같다.

제 4 급 : 1, 2, 3, 4항

제 5 급 : 1, 2, 8항

제 6 급 : 1, 2, 3항(이상 10개항)

3. 표 2의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를 보면, 새로 추가된 10개 항 외는 종전의 장해등급분류표와 그 내용이 모두 같으나, 다만 제3급 7항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표 1의 종전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3급 4항은 표 2의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제3급 6항과 7항으로 나누어지고, 표 1의 제3급 4항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표 2의 3급 7항에서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그 내용이 변경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즉, 표 1의 3급 4항에서 “모지 및 사지”이던 것이 표 2의 3급 7항에는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며, 이것이 바로 착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표 1. 종전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 1 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연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 2 급	1. 한 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열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한 때 3.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부터 4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 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부터 4까지 중 또는 제 4 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히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 급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히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전체적으로 볼 때, 표 2에는 표 1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고, 여기에 10개 항이 새로 추가된 것 뿐이므로, 3급 7항의 이 차이는 “모지 및 시지”가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으로 잘못 옮겨진 것으로 짐작되나, 이것이 약관상의 문제인 만큼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착오의 이유를 설명코자 한다.

논거의 예시

1. 표 1과 표 2에서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모두 3급에 해당되므로 여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한 손의 제 1, 3, 4, 5지를 잃었을 때”와 “한 손의 제 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표 1의 종전의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하면, 4급 4항의

표 2. 현행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 1 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1. 한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 급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 급의 2부 7까지중 또는 제 4 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개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 5 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모자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에 해당되어, 표 1에서는 4급으로 분류된다.

이때 표 2의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하면, 표 2의 4급 9항은 표 1의 4급 4항과 그 내용이 같으므로 여기에서도 4급에 해당되나, 다만 표 2의 3급 7항이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손의 제 1, 3, 4, 5지를 잃었을 때”와 “한손의 제 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여기에도 해당되어 틀림없는 3급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하면, “한손의 제 1, 3, 4, 5지를 잃었을 때”와 “한손의 제 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약관상 3급 7항과 4급 9항에 각각 해당되어, 동일 결함이 3급이 되기도 하고 4급이 되기도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등급간의 중복현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표 2의 3급 7항과 4급 9항에 해당되는 장해를 유형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3급 7항은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이므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첫째손가락을 포함한 4손가락의 결손

제 1, 3, 4, 5지를 잃었을 때

(2)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4손가락의 결손

제 2, 3, 4, 5지를 잃었을 때

2) 4급 9항은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이므로 이경우의 3손가락 이상은 “3손가락을 잃었을 때”와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구분되므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첫째손가락을 포함한 3손가락의 결손

제1, 3, 4지

제1, 3, 5지 } 를 잃었을 때

제1, 4, 5지

(2)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3손가락의 결손

제2, 3, 4지

제2, 3, 5지 } 를 잃었을 때

제2, 4, 5지

(3) 첫째손가락을 포함한 4손가락의 결손

제1, 3, 4, 5지를 잃었을 때

(4)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4손가락의 결손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

이상으로 3급 7항의 (1), (2)는 4급 9항의 (3), (4)와 동일하므로 3급 7항과 4급 9항은 여기에서 서로 중복된다. 이러한 분류상의 중복부분이 착오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중증인 3급 7항의 장해는 보다 경증인 4급 9항속에 모두 포함되므로 표 2의 3급 7항은 사실상 불필요한 항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상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를 실제 사용함에 있어 “한손의 제1, 3, 4, 5지를 잃었을 때”와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4손가락의 결손이라는 개념이 우선하여, 3급 7항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3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편의해석에 따라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3급이고, “……3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4급이라는 전혀 별개의 구분이 적동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분류표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어떤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이 약관상의 장해등급분류표의 3급과 4급에 각각 해당된다면, 약관상의 약정급여는 부득이 3급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손의 제1, 3, 4, 5지를 잃었을 때”와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4급이 아닌 3급으로 잘못 분류되어, 수익자에게는 50%의 장해급여금이 과지급됨과 동시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현행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3급 7항이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현행 약관상 장해 몇급에 해당되는 가를 살펴 보면, 여기에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즉,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아니므로 3급 6항은 아니며,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도 아니므로 3급 7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도 아니므로 4급 8항도 아니며,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도 아니므로 4급 9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 2의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하면,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즉, “한손의 제1, 2, 3, 4지를 잃었을 때”와 “한손의 제1, 2, 3, 5지를 잃었을 때” 및 “한손의 제1, 2, 4, 5지를 잃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장해등급·항이 없다는 결론이 된다.

이와 같이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는 3급 7항보다 적용범위가 넓고 정도가 중한 장해가 유형별 구분에서 누락된 것은 분류상 분명한 차오로 지적된다.

그러나 표 2의 3급 7항을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정정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모두 해소될 뿐더러, 3급 6항은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이고, 3급 7항은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되어, 6항과 7항과의 관계는 같은 3급으로서 장해등급의 분류상 논리가 정연하게 된다.

이러한 장해등급의 분류기준은 표 1의 종전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3급 4항과, 표 4의 자보

후유장해등급표의 6급 7항 및 표 5의 산재 신체장해등급표의 6급 7항이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한손의 5손가락을 잃은 것”과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은 것”과는 항상 동일한 장해등급에 속하는 결함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사람의 손이 원숭이와 같은 동물의 손과 다른 점은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눌러 주먹을 쥘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손 뿐이다. 주먹을 쳤다는 것은 물건을 장악하여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므로 여기에 소유권이 생기게 되고, 소유권이 생김으로써 법이 생겨났다고 볼 때, 법은 사람의 엄지손가락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둘째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의 다음 손가락으로 집게손가락, 시지, 식지, 검지, 염지 등 여러가지 명칭이 다양한 만큼 쓰임새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손가락의 중요도를 나타낼 때는 제 1, 2, 3, 4, 5지의 순으로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첫째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개념은 장해등급분류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의 사용불능”은 6급,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5급이며,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4급이 된다. 그러므로 3급은 4급의 결함, 즉,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결손”이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에 나머지 3손가락의 결손이 추가되면 3급 6항이 되고, 2손가락의 결손이 추가되면 3급 7항이 되는 것이 올바른 분류가 되는 것이다.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3급 7항과 같이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항상 둘째손가락 또는 첫째손가락이 남아있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기준에도 맞지 않게 된다.

4.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 3급에 해당되는 손가락의 장해는 어떻게 성립되며, 또 이러한 장해는 등급간에 서로 어떠한 관계로서 연계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면, 3급 6항과 3급 7항의

표 3. 장해등급별 약정급여금표

장해급수	장 해 급 여 금
2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3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4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5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6 급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 장해 2~3급시에는 차후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황남철 : 현행 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일부 착오에 관하여—

표 4. (自保) 後遺障害 等級表

등급	後遺障害	勞動能力喪失率
1 級	1. 두 눈이 失明된 것 2. 咀嚼과 言語의 機能을 喪失할 것 3. 神經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언제나 他人의 看護를 必要로 하는 것 4. 胸腹部 臟器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언제나 他人의 看護를 必要로 하는 것 5. 半身不隨로 된 것 6. 兩上肢의 肘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7. 兩上肢의 機能이 喪失한 것 8. 兩下肢의 膝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9. 兩下肢의 機能이 喪失한 것	100%
2 級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2이하로 된 것 2. 두 눈의 視力이 0.02이하로 된 것 3. 兩上肢의 腕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4. 兩下肢의 足關節 以上이 切斷된 것	100%
3 級	1. 한 눈의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6이하로 된 것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을 喪失한 것 3. 精神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終身 勞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 4. 胸腹部 臟器의 機能에 顯著하게 障害를 남겨 終身勞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 5. 양손의 手指全部가 切斷된 것	100%
4 級	1. 두 눈의 視力이 0.06이하로 된 것 2. 咀嚼과 言語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3. 鼓膜의 全部의 缺損 등으로 인하여 兩耳의 聽力이 完全히 喪失된 것 4. 1上肢의 肘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5. 1下肢의 機能이 喪失된 것 6. 양손의 手指全部의 機能을 喪失한 것 7. 兩足의 “리스프랑” 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92%
5 級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1이하로 된 것 2. 1上肢의 腕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3. 1下肢의 足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4. 1上肢의 機能이 喪失된 것 5. 1下肢의 機能이 喪失된 것 6. 兩足의 足趾 全部가 切斷된 것	79%
6 級	1. 두 눈의 視力이 0.1이하로 된 것 2. 咀嚼 또는 言語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3. 鼓膜의 大部分이 缺損 등으로 인하여 兩耳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아니하면 큰소리를 解得할 수 없는 것 4. 脊椎에 顯著하게 畸形 또는 運動障害를 남긴 것 5. 1上肢 3大關節中 2關節의 機能을 喪失한 것 6. 1下肢의 3大關節중 2關節의 機能을 喪失된 것 7. 한 손의 5指 또는 拇指와 食指를 포함한 4指가 切斷된 것	67%
7 級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6이하로 된 것 2. 鼓膜의 中等度의 缺损 등으로 인하여 兩耳의 聽力이 40 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音聲을 解得할 수 없는 것 3. 精神에 障害를 냠겨 輕易한 勞務이외의 勞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	

保險醫學會誌：第9卷

	4. 神經系統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겨 輕易한 勞務 이외의 勞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 5. 胸腹部 臟器의 機能에 障害를 남겨 輕易한 勞務 이외의 勞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 6. 한 손의 拇指와 食指가 切斷된 것 또는 拇指 혹은 食指를 包含한 3指 이상의 手指가 切斷된 것 7. 한 손에의 5指 또는 拇指와 食指를 包含한 4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8. 1足의 “리스프랑” 關節 이상이 切斷된 것 9. 1上肢에 假關節을 남겨 현저한 運動障害를 남긴 것 10. 1下肢에 假關節을 남겨 顯著한 運動障害를 남긴 것 11. 兩足의 足趾의 全部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2. 女子의 外貌에 顯著하게 醜狀을 남긴 것 13. 兩側의 皐丸이 壓失된 것	56%
8級	1. 한 눈이 失明되거나 또는 한 눈의 視力이 0.02이하로 된 것 2. 脊椎에 運動障害를 남긴 것 3.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한 2指가 切斷된 것 4. 한 손의 拇指와 食指 또는 拇指 혹은 食指를 包含한 3指 이상의 手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5. 1下肢가 5cm 이상이 短縮된 것 6. 1上肢의 3大關節中 1關節이 使用不能하게 된 것 7. 1下肢의 3大關節中 1關節이 使用不能하게 된 것 8. 1上肢에 假關節을 남긴 것 9. 1下肢에 假關節을 남긴 것 10. 1足의 足趾의 全部가 切斷된 것 11. 脾臟 또는 한 쪽의 腎臟이 壓失된 것	45%
9級	1. 두 눈의 視力이 0.6이하로 된 것 2. 한 눈의 視力이 0.06이하로 된 것 3. 두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을 남긴 것 4. 양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을 남긴 것 5. 鼻를 缺損하거나 그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6. 咀嚼과 言語의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7. 鼓膜의 全部의 缺損 등으로 인하여 1耳의 聽力이 壓失된 것 8. 한 손의 拇指가 切斷된 것, 食指를 包含한 2指가 切斷된 것 또는 拇指와 食指 이외의 3指가 切斷된 것 9.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한 2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0. 1足의 足趾를 包含한 둘 이상의 足趾가 切斷된 것 11. 1足의 足趾의 全部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2. 生殖器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13. 精神에 障害를 남겨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되는 것 14. 神經系統의 機能에 障害를 남겨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되는 것	35%
10級	1. 한 눈의 視力이 0.1이하로 된 것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3. 14齒 이상에 대하여 齒牙補綴을 加한 것 4. 鼓膜의 대부부의 缺損등으로 인하여 1耳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않으면 큰 소리를 解得할 수 없는 것 5. 한 손의 食指가 切斷된 것 또는 拇指와 食指 以外의 2指가 切斷된 것 6. 한 손의 拇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食指를 包含한 2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27%

—황남철 : 현행 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일부 차오에 관하여—

	또는 拇指와 食指 이외의 3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7. 1下肢가 3cm이상 短縮된 것 8. 1足의 第1足趾 또는 다른 4足趾가 切斷된 것 9. 1上肢의 3大關節中 1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10. 1下肢의 3大關節中 1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를 남긴 것	
11 級	1. 두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 또는 運動障害를 남긴 것 2. 두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障害를 남긴 것 3.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을 남긴 것 4. 鼓膜의 中等度의 缺損 등으로 인하여 1耳의 聽力이 4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音聲을 解得할 수 없는 것 5. 脊椎에 畸形을 남긴 것 6. 한 손의 長指 또는 藥指가 切斷된 것 7. 한 손의 食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또는 拇指이외의 2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8. 1足의 第1足趾를 包含한 둘이상의 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9. 胸腹部 臟器에 障害를 남긴 것	20%
12 級	1. 한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 또는 運動障害를 남긴 것 2.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장해를 남긴 것 3. 7齒 이상의 齒牙補綴을 加한 것 4. 1耳의 耳殼의 대부분이 缺損된 것 5. 鎮骨, 胸骨, 肋骨, 肩胛骨 또는 骨盤骨에 顯著한 畸形을 남긴 것 6. 1上肢의 3大關節中의 1關節의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7. 1下肢의 3大關節中의 1關節의 機能에 障害를 남긴 것 8. 長管骨에 畸形을 남긴 것 9. 한 손의 長指 또는 藥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0. 1足의 第2足趾가 切斷된 것, 第2足趾를 包含한 2足趾가 切斷된 것 또는 第3足趾 이하의 3足趾가 切斷된 것 11. 1足의 第1足趾 또는 다른 4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12. 局部에 頑固한 神經症狀을 남긴 것 13. 男子의 外貌에 顯著한 醜狀을 남긴 것 14. 女子의 外貌에 醜狀을 남긴 것	14%
13 級	1. 한 눈의 視力이 0.6이하로 된 것 2. 한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를 남긴 것 3. 두 눈의 眼瞼의 일부에 缺損을 남겼거나 또는 속눈썹이 빠진 흠을 남긴 것 4. 한 손의 小指가 切斷된 것 5. 한 손의 拇指의 指骨의 一部가 切斷된 것 6. 한 손의 食指의 指骨의 一部가 切斷된 것 7. 한 손의 食指의 末關節을 屈伸시킬 수 없게 된 것 8. 1下肢의 1cm이상 短縮된 것 9. 1足의 第3足趾이하의 하나 또는 둘의 足趾가 切斷된 것 10. 1足의 第2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第2足趾를 包含한 2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또는 第3足趾 이하의 3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9%
14 級	1. 한 눈의 眼瞼의 일부에 缺損이 남았거나 또는 속 눈썹이 빠진 흠을 남긴 것 2. 3齒 이상에 대하여 齒牙補綴을 加한 것 3. 上肢의 露出面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醜한 흔적을 남긴 것 4. 下肢의 露出面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추한 흔적을 남긴 것 5. 한 손의 小指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6. 한 손의 拇指와 食指 이외의 手指의 指骨의 일부가 切斷된 것	5%

7. 한 손의 拇指에 食指 이외의 手指의 末關節을 屈伸시킬 수 없게 된 것
8. 1足의 第3足趾 이하의 하나 또는 둘의 足趾가 使用不能하게 된 것
9. 局部에 神經症狀을 남긴 것
10. 男子의 外貌에 醜狀을 남긴 것

표 5. (產災) 身體障害等級表

第1級 (1,340日分)

- 1 두 눈이 失明된 者
- 2 咀嚼과 言語의 機能이 全廢된 者
- 3 精神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 4 胸腹部臟器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恒常 介護를 要하는 者
- 5 半身不隨가 된 者
- 6 두 팔을 肘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 7 두 팔의 機能이 全廢된 者
- 8 두 다리를 膝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 9 두 다리의 機能이 全廢된 者

第2級 (1,190日分)

-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2以下로 된 者
- 2 두 눈의 視力이 0.02以下로 된 者
- 3 두 팔을 腕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 4 두 다리를 足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第3級 (1,050日分)

-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06以下로 된 자
-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이 全廢된 者
- 3 精神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終身토록 勞務에 從事하지 못하는 者
- 4 胸腹部臟器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終身토록 勞務에 從事하지 못하는 者
- 5 두 손의 手指를 모두 喪失한 者

第4級 (920日分)

- 1 두 눈의 視力이 0.06以下로 된 者
- 2 咀嚼과 言語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 3 鼓膜의 全部의 缺損이나 그 외의 原因으로 因하여 두 귀의 聽力を 全히 喪失한 者
- 4 한 팔을 肘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 5 한 다리를 膝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 6 두 손의 手指가 모두 廢用된 者
- 7 두 팔을 “리스푸랑”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第5級 (790日分)

-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1以下로 된 者
- 2 한 팔을 腕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 3 한 다리를 足關節 以上에서 喪失한 者
- 4 한 팔의 機能이 全廢된 者
- 5 한 다리의 機能이 全廢된 者
- 6 두 발의 足趾를 모두 喪失한 者

—황남철 : 현행 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일부 차오에 관하여—

第6級 (670日分)

- 1 두 눈의 視力이 0.1以下로 된 者
-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 3 鼓膜의 大部分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두 귀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 4 脊椎에 顯著한 畸形이나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 5 한 팔의 3大關節中의 2個關節이 廢用된 者
- 6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2個關節이 廢用된 者
- 7 한 손의 5個의 手指 또는 拇指 示指를 包含하여 4個의 手指를 壞失한 者

第7級 (560日分)

- 1 한 눈이 失明되고 다른 눈의 視力이 0.6以下로 된 者
- 2 鼓膜의 中等度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두 귀의 聽力이 40센티미터 以上의 거리에서는 普通 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 3 精神에 障害가 남아 輕易한 勞務以外에서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 4 神經系統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아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 5 胸腹部臟器의 機能에 障害가 남아 輕易한 勞務以外에는 從事하지 못하는 者
- 6 한 손의 拇指와 示指를 壹失한 者 또는 拇指나 示指를 包含하여 3個以上의 手指를 壹失한 者
- 7 한 손의 5個의 手指 또는 拇指와 示指를 包含하여 4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 8 한 발을 “리스푸랑” 關節以上에서 壹失한 者
- 9 한 팔에 假關節이 남아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 10 한 다리에 假關節이 남아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 11 두 발의 足指가 모두 廢用된 者
- 12 外貌에 顯著한 醜狀이 남은 女子
- 13 兩쪽의 皐丸을 壹失한 者

第8級 (450日分)

- 1 한 눈이 失明되거나 또한 한 눈의 視力이 0.02以下로 된 者
- 2 脊椎에 運動障害가 남은 者
- 3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를 壹失한 者
- 4 한 손의 拇指와 示指가 廐用된 者 또는 한 손의 拇指 示指를 包含하여 3個以上의 手指가 廐用된 者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以上 短縮된 者
- 6 한 팔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이 廐用된 者
- 7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이 廐用된 者
- 8 한 팔에 假關節이 남은 者
- 9 한 다리에 假關節이 남은 者
- 10 한 발의 5個의 足趾를 모두 壹失한 者
- 11 肝臟 또는 한 쪽의 腎臟을 壹失한 者

第9級 (350日分)

- 1 두 눈의 視力이 0.6以下로 된 者
- 2 한 눈의 視力이 0.06以下로 된 者
- 3 두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이 남은 者
- 4 두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이 남은 者
- 5 코가 缺損되어 그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 6 咀嚼과 言語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 7 鼓膜의 全部가 缺损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한 귀의 聽力を 全혀 壹失한 者
- 8 한 손의 拇指를 壹失한 者 또는 示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를 壹失한 者 또는 拇指와 示指 以外의 3個의 手指를 壹失한 者
- 9 한 손의 拇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가 廐用된 者

保險醫學會誌：第 9 卷

- 10 한 발의 第 1 足趾를 包含하여 1個以上의 足趾를 壓失한 者
11 한 발의 足趾가 모두 廢用된 者
12 生殖器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13 精神에 障害가 남아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된 者
14 神經系統의 機能에 障害가 남아 從事할 수 있는 勞務가 相當한 程度로 制限된 者

第10級 (270日分)

- 1 한 눈의 視力이 0.1以下로 된 者
2 咀嚼 또는 言語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3 14個 以上의 齒牙에 對하여 齒科補綴을 加한 者
4 鼓膜의 大部分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한 귀의 聽力이 耳殼에 接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5 한 손의 示指를 壓失한 者 또는 拇指와 示指以外의 2個의 手指를 壓失한 者
6 한 손의 拇指가 廢用된 者 또는 示指를 包含하여 2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또는 拇指와 示指 以外의 3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 以上 短縮된 者
8 한 발의 第 1 足趾 또는 그 外의 足趾를 壓失한 者
9 한 팔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10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顯著한 障害가 남은 者

第11級 (200日分)

- 1 두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가 또는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2 두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3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缺損이 남은 者
4 鼓膜의 中等度의 缺損이나 그 外의 原因으로 因하여 한 귀의 聽力이 40센티미터 以上의 거리에서는 普通 말소리를 解得하지 못하는 者
5 脊椎에 畸形이 남은 者
6 한 손의 中指 또는 藥指(環指)를 壓失한 者
7 한 손의 示指가 廢用된 者 또는 拇指와 示指以外의 2個의 手指가 廢用된 者
8 한 발의 第1足趾를 包含하여 2個以外의 足趾가 廢用된 者
9 胸腹部臟器에 障害가 남은 者

第12級 (140日分)

- 1 한 눈의 眼球에 顯著한 調節機能障害 또는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2 한 눈의 眼瞼에 顯著한 運動障害가 남은 者
3 7個以上의 齒牙에 對하여 齒科補綴을 加한 者
4 한 귀의 耳殼의 大部分이 缺損된 者
5 鎮骨, 胸骨, 肋骨, 肩胛骨이나 骨盤骨에 顯著한 畸形이 남은 者
6 한 팔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7 한 다리의 3大關節中의 1個關節의 機能에 障害가 남은 者
8 長管骨에 畸形이 남은 者
9 한 손의 中指 또는 藥指(環指)가 廢用된 者
10 한 발의 第 2 足趾를 壓失한 者 또는 第 2 足趾를 包含하여 2個의 足趾를 壓失한 者 또는 第 3 足趾 以下의 3個의 足趾를 壓失한 者
11 한 발의 第 1 足趾 또는 그 外의 足趾를 壓失한 者
12 局部에 頑固한 神經症狀이 남은 者
13 外貌에 顯著한 醜狀이 남은 者
14 外貌 醜狀인 남은 者

—황남철 : 현행 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일부 차오에 관하여—

第13級 (90日分)

- 1 한 눈의 視力이 0.06以下로 된 者
- 2 한 눈에 半盲症, 視野狹窄 또는 視野變狀이 남은 者
- 3 두 눈의 眼瞼의 一部에 缺損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缺損이 남은 者
- 4 한 손의 小指를 壞失한 者
- 5 한 손의 拇指와 拇骨의 一部를 壹失한 者
- 6 한 손의 示指의 指骨의 一部를 壹失한 者
- 7 한 손의 示指의 末關節을 屈伸할 수 없는 者
- 8 한다리가 1센티미터 以上 短縮된 者
- 9 한 발의 第3足趾 以上의 1個 또는 2個의 足指를 壹失한 者
- 10 한 발의 第2足趾가 廢用된 者 또는 第2足趾를 包含하여 2個의 足趾가 廉用된 者 또는 第3足趾 以下の 3個의 足指가 廉用된 者

第14級 (50日分)

- 1 한 눈의 眼瞼의 一部에 缺損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缺損이 남은 者
- 2 3個 以上的 齒牙에 對하여 齒科補綴을 加한 者
- 3 팔의 露出面에 手掌大的 醜痕이 남은 者
- 4 다리의 露出面에 手掌大的 醜痕이 남은 者
- 5 한 손의 小指가 廉用된 者
- 6 한 손의 拇指와 示指以外의 手指의 指骨의 一部를 壹失한 者
- 7 한 손의 拇指와 示指以外의 手指의 末關節을 屈伸할 수 없는 者
- 8 한 발의 第3足趾 以下の 1個 또는 2個의 足趾가 廉用된 者
- 9 局部의 神經症狀이 남은 者
- 10 外貌의 醜狀이 남은 男子

분류기준과 그 유래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4급 8항의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5급 5항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은 것”이 추가되면,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되어 3급 6항이 된다. 그러므로 4급 8항에 5급 5항의 장해가 가중되면 3급 6항이 된다.

4급 9항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의 3손가락 이상은 “3손가락을 잃었을 때”와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구분되므로 먼저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5급 4항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은 것”이 추가되면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되어 3급 6항이 된다. 그러므로 4급 9항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5급 4항의 장해가 가중되면 3급

6항이 된다.

4급 9항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5급 3항의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은 것”이 추가되면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되어 3급 6항이 된다. 그러므로 4급 9항의 4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5급 3항의 장해가 가중되면 역시 3급 6항이 된다.

그러나 4급 9항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5급 3항의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은 것”이 추가되면 그 결과는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되어 여기에서 3급 7항의 본래의 유형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4급 9항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5급 3항의 장해가 가중되면 3급 7항이 된다.

그리고 또, 4급 8항의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6급 7항의 “첫째손가

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을 잃은 것”이 추가되면 그 결과는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되어, 역시 3급 7항의 본래의 유형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4급 8항에 6급 7항의 2손가락을 잃은 것이 가중되면 3급 7항이 된다. 이와 같은 등급간의 상관관계를 등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text{급 } 8\text{ 항} + 5\text{급 } 5\text{ 항} = 3\text{급 } 6\text{ 항}$$

$$4\text{급 } 9\text{ 항의 } 3\text{손가락} + 5\text{급 } 4\text{ 항} = 3\text{급 } 6\text{ 항}$$

$$4\text{급 } 9\text{ 항의 } 4\text{손가락} + 5\text{급 } 3\text{ 항} = 3\text{급 } 6\text{ 항}$$

$$4\text{급 } 9\text{ 항의 } 3\text{손가락} + 5\text{급 } 3\text{ 항} = 3\text{급 } 7\text{ 항}$$

$$4\text{급 } 8\text{ 항} + 6\text{급 } 7\text{ 항의 } 2\text{손가락} = 3\text{급 } 7\text{ 항}$$

이상으로 손가락의 장해는 장해 4급에 주로 5급의 장해가 가중되면 장해 3급이 되며, 3급 6항은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이고, 3급 7항은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적선택의 문제점

가입시 이미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약관상의 규정으로 가입시 장해가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에서는 장해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할 필요가 있고, 그 장해가 있는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른 장해가 가중될 경우, 새로이 발생될 장해는 어떤 상태로 발전될 것인가를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여 검토하게 된다. 그 결과 기존의 장해가 미칠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약이 승낙되나, 경미한 장해가 가중될 경우라도 3급 이상의 상위등급으로 발전될 소지가 많은 장해는 거절하는 것이 보통이다.

손가락의 장해는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제3, 4, 5, 6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장해 3급이 최상위등급이

된다. 일반적으로 동일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가중되기 쉬운 것도 손가락의 장해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3급 7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3급 7항은 4급 9항의 4손가락을 잃었을 때와 동일한 내용의 유형이 된다.

그러므로 가입시 다발성 수지절단이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에서,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 따라 최상위등급인 장해 3급과 4급 9항의 4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거절하고, 그 이외의 장해 4급 이하를 일률적으로 “가”처리하게 되면, 특히 4급 9항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다른 1손가락의 절단만 가중도어도 쉽게 장해 3급이 되어, 20%의 장해급여금과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손의 제1, 3, 4, 5지를 잃었을 때”와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3급 7항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해당되므로 3급을 이유로 거절된다. 이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는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이다.

2. 4급 9항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4급으로서 “가”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예는 “한손의 제2, 3, 4지를 잃었을 때”이다.

이와 같이 가입시 다발성 수지절단이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에서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3급을 이유로 거절하고 “한손의 제2, 3, 4지를 잃었을 때”는 4급이라하여 “가”처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

즉, 가입시 장해 4급인 “한손의 제2, 3, 4지의 결손”이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제5지의 결손이 가중되면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가 되어 장해 3급 7항에 해당되므로 20%의 장해급여금과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의 지급사유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원래 제5지의 결손 자체는 장해 6급 7항에 해당되므로 6급의 장해급여금은 표 3과 같이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손의 제2, 3, 4지를 잃었을 때”는 4급 9항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이고,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4급 9항의 4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해당되므로 “한손의 제2, 3, 4지를 잃었을 때”에 제5지의 결손이 가중되어도 그 결과는 같은 4급으로서 하등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으나, 3급 7항이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잘못 기재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와 같은 부당한 지급사유가 생기게된다.

그러므로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3급 7항이 정정되지 않는 한, 4급 9항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다발성 수지절단의 의적 선택기준을 3급과 4급의 유형에서 구분하게 되면,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3급 7항과 4급 9항의 4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동일한 내용의 장해이므로 등급별 선택기준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4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는 거절하고, 장해 4급의 3손가락 이하를 잃었을 때를 “가”처리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관례에 따라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4손가락의 결손이므로 거절하고, “한손의 제1, 2, 3지를 잃었을 때”는 3손가락의 결손이라하여 “가”처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기게 된다.

즉,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한손의 제2, 3지를 잃었을 때”에 6급 7항에 해당되는 “제4, 5지의 결손”이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손의 제1, 2, 3지를 잃었을 때”는 “한손의 제2, 3지를 잃었을 때”에 5급 3항에 해당되는 “제1지의 결손”이 가중된 것이 되므로, 중증도를 따지면 “한손의 제1, 2, 3지를 잃었을 때”가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보다 더 중증의 장해가 된다.

그러므로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를

4손가락의 결손이라하여 거절하고, “한손의 제1, 2, 3지를 잃었을 때”를 3손가락의 결손이라하여 “가”처리하게 되면, 경증을 거절하고 중증을 선택하는 결과가 되어 경·중이 서로 뒤 바뀌는 혼란이 생기게 된다.

바꿔 말하면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4급 9항의 4손가락을 잃었을 때이나 “한손의 제1, 2, 3지를 잃었을 때”는 4급 8항의 “한손의 제1, 2지를 잃었을 때”에 6급 7항의 “1손가락의 결손”이 가중된 유형이므로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보다 더 중증의 장해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한손의 제1, 2, 3지를 잃었을 때”에 나머지 제4, 5지 중에서 “1손가락의 결손”만 가중되어도 장해 3급이 되어 20%의 장해급여금과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한손의 제1, 2, 3지를 잃었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은 잘못 기재된 3급 7항이 기준이 되어 4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3급으로서 거절하고, 3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4손가락을 잃었을 때보다 무조건 경증인 것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가”처리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장해 4급의 “가”처리는 경미한 장해의 가중만으로 장해 3급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며, 특히 “한손의 제1, 2, 3지의 결손”과 같은 경우는 3급 7항의 착오 여하에 관계없이 거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끝으로

1. 분류란 어떤 사상을 몇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공통의 척도를 만들어, 서로가 같은 기준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분류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분류의 생명은 보편타당성이 높아야하는 것이다.

현행 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와 같이 어떤 일반적인 장해가 유형별 구분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등급간에 서로 중복되어 있는 현상은 분류상의 착오에 기인하므로, 이와 같은 착오를 시정하

지 않고서는 등급간의 중복과 누락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해소할 길이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착오로 인한 업무상의 손실도 피할 수 없게 된다.

2.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3급 7항인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와 제4급 9항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와의 사이에는 “4손가락”과 “3손가락 이상”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3손가락이 상=4손가락”이 되는 경우에는 3급 7항과 4급 9항은 그 내용이 동일하게 되므로 여기에서 서로 중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중복현상으로 중증인 3급 7항의 장해가 오히려 경증인 4급 9항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결과가 되어 표 2의 3급 7항은 분류상 전혀 불필요한 항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분류상 문제가 있는 3급 7항이 기준이 되어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3급 7항이고, “……3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4급 9항이라는 전혀 별개의 구분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손의 제1, 3, 4, 5지를 잃었을 때”와 “한손의 제2, 3, 4, 5지를 잃었을 때”는 4급이 아닌 3급으로 잘못분류되어 손해율은 더욱 크지는 결과가 된다.

3. “한손의 제1, 2, 3, 4지를 잃었을 때”와 “한손의 제1, 2, 3, 5지를 잃었을 때” 및 “한손의 제1, 2, 4, 5지를 잃었을 때”와 같이,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를 적용하면, 이에 해당되는 장해등급·항이 없기 때문에 이때의 분류표는 매우 불편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장해는 분류표를 충분히 검토한 연후, 그 정도가 3급 6항보다 경하고 3급 7항보다 중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결국에는 같은 3급을 적용할 수 밖에 없으나, 3급의 몇항에 속하는 것인가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상 장해등급의 엄정한 급·항 표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3급 7항보다 적용범위가 넓고 정도가

중한 장해가 장해등급분류표의 유형별 구분에서 누락된 것은 분류상 분명한 착오로 지적된다.

4. 다발성 수진절단에 있어서는 장해 4급에 5급 또는 6급 7항의 장해가 가중되면 장해 3급의 유형이 탄생된다. 그러므로 장해 3급은 반드시 4급의 장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5급 3항의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5급 5항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은 것”이 가중되면 그 결과는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되어 현행 약관의 3급 7항의 유형이 된다.

그리고 또, 5급 4항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에 6급 7항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을 잃은 것”이 가중되면 역시 같은 3급 7항의 유형이 된다.

이와 같이 현행 약관의 3급 7항은 장해 5급을 전제로하고 있는 유형이므로 3급이 아닌 4급의 장해임을 알 수 있다.

5.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3급 7항이 전술한 여러가지 모순에도 불구하고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잘못 기재된 것은 장해등급분류표의 개정작업 과정의 우연한 실수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약관의 제3급 7항을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정정하면, 착오로 인한 분류상의 문제는 모두 해소될 뿐더러 종전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3급 4항이나, 자보 및 산재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6급 7항과도 동일한 기준의 분류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현행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제3급 7항은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로 정정함이 마땅하다.

—황남철 : 현행 생명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의 일부 차오에 관하여—

참 고 문 헌

1)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약관집 III

- 2)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및 타사의 현행 생명보험
 약관
- 3) 보험의학회지 제7권 제1호 1988
- 4)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사절체 대사용 자료(의
 무부) 1988. 1. 9~1989. 7. 29